

# 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) 민간위탁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90
----------	------

2024년 9월 11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 
나. 제출일 : 2024년 8월 12일  
다. 회부일 : 2024년 8월 14일  
라. 상정일 :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24년 9월 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구종원 평생교육국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)의 위탁기간이 2024.12.31. 만료 예정에 따라,
-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) 운영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

- 추진 필요성

- 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)는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○ 위탁 사무 내용

- 가정 밖 청소년 보호·지원사업
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-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, 3층
- 시설규모 : 45인승 대형버스
  - 휴게공간, 상담좌석, 외부 부스 등
- 이용대상 : 가출·거리배회·노숙 청소년 등
- 보호기간 : 24시간 이내 일시보호

○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5.1.1 ~ 2027.12.3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523백만원('24년)
- 산출근거 : 인건비 380백만원, 운영비 27백만원, 사업비 116백만원
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, 서남)은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(2025.1.~2027.12.)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임.

#### 〈 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,서남)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〉

구분	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)	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남)
위탁사무명	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 (이동형, 서북) 운영	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 (이동형, 서남) 운영
소재지	서울시 종로구 종로11길11, 3층	
시설규모	버스 45인승	버스 25인승
주요시설	휴게공간, 상담좌석, 외부부스 등	
이용대상	가정 밖 위기청소년	
위탁사무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</li> <li>· 청소년 문제예방사업</li> <li>·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</li> <li>· 쉼터의 시설물, 장비 등 유지관리</li> <li>·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</li> <li>·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</li> <li>· 기타 '시'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/ul>	
민간위탁 기간	3년(2025.1.1. ~ 2027.12.31.)	
수탁자 선정방식	공개모집	
소요예산 ('24년)	523백만원	522백만원
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	적정	

-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,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가정 밖 위기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.
- 서북이동쉼터는 45인승 버스, 서남이동쉼터는 25인승 버스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, 민간위탁금은 각각 5억 2천 3백만원(서북)과 5억 2천 2백만원(서남)으로 운영하고 있으며,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아웃리치<sup>1)</sup>, 간식제공, 응급처치, 교육 및 정보제공,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서북이동쉼터는 최근 3년 서울시 지도·점검에서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(카드사용 제한업종에서 지출), 직원 출장관리 미흡(출장비 미지급), 공사내역 불일치, 기능보강공사 수의계약 홈페이지 미공개 등이 지적된 바 있고,
- 서남이동쉼터는 업무추진비 집행서류 미비, 전년도 이월금 수입 예산편성 미흡, 자산관리대장 누락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.

**< 최근 3년 시립서북청소년이동쉼터 지도·점검 지적사항 >**

-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(카드사용제한업종에서 지출)
- 기관명의 차량 자산관리대장 누락
- 근태관리 미흡
- 직원생일선물 수령대장 누락
- 쉼터자산 차량 법인명의 등록
- 직원출장관리 미흡(출장자 출장비 미지급, 출장복명서 미작성)
- 공사내역 불일치
- 계약체결 내부기안 미작성
- 기능보강공사 수의계약 홈페이지 미공개

1) '아웃리치'란 밖으로 나가(out) 서비스가 가능하게 한다(reach)는 의미로 거리에 나가가 청소년을 위한 직접적 긴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

**< 최근 3년 시립서남청소년이동쉼터 지도·점검 지적사항 >**

- 전년도 이월금 수입 예산편성 미흡
- 자산관리대장 누락
- 업무추진비 집행서류 미비
- 12월 원천징수액 1월 납부

- 서북·서남이동쉼터의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은 서북은 13년, 서남은 8년에 걸쳐 장기 수탁해온 바, 법인의 행정역량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공고 및 선정 심사시 기본적인 행정능력 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**< 시립서북청소년이동쉼터 민간위탁 수탁현황 >**

- 2004. 4.12. ~ 2007. 2.28. : 신 규 / 한국청소년연맹
- 2007. 3. 1. ~ 2010. 2.28. : 재계약 / 한국청소년연맹
- 2010. 3. 1. ~ 2012.12.31. : 재위탁 / 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
- 2013. 1. 1. ~ 2014.12.31. : 재계약 / 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
- 2015. 1. 1. ~ 2017.12.31. : 재위탁 / 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
- 2018. 1. 1. ~ 2019.12.31. : 재계약 / 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
- 2020. 1. 1. ~ 2022.12.31. : 재위탁 / 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
- 2023. 1. 1. ~ 2024.12.31. : 재계약 / 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

**< 시립서남청소년이동쉼터 민간위탁 수탁현황 >**

- 2015. 1. 1. ~ 2017. 12. 31. : 신 규 / 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
- 2018. 1. 1. ~ 2019. 12. 31. : 재계약 / 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
- 2020. 1. 1. ~ 2022. 12. 31. : 재위탁 / 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
- 2023. 1. 1. ~ 2024. 12. 31. : 재계약 / (재)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9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)의 위탁기간이 2024.12.31. 만료 예정에 따라,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)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  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   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    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 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립청소년이동쉼터(서북)는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가정 밖 청소년 보호·지원사업
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-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, 3층
- 시설규모 : 45인승 대형버스
  - 휴게공간, 상담좌석, 외부 부스 등
- 이용대상 : 가출·거리배회·노숙 청소년 등
- 보호기간 : 24시간 이내 일시보호

마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5. 1. 1. ~ 2027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523백만원('24년)
  - 인건비 380백만원, 운영비 27백만원, 사업비 116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-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규리 (☎ 2133-4133)